

2. 住宅建設促進法 施行令改正(案)

立法豫告 1990.5.10 公告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가. 도시의 대부분 전·월세 셋방가구들이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형 단독주택 건설을 법적으로 허용함.
- 나. 공동주택의 건축기준을 완화함.

	현 행	변 경
아파트	4층 이상	5층이상
연립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100평)초과, 3층 이하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200평)초과, 4층 이하
다세대주택	동당 연건축면적이 330제곱미터(100평)이하, 3층 이하	동당 연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200평)이하, 4층 이하

- 다. 건설부장관이 지정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건설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지정할 수 있던 것을 매 3년마다 지정하는 것으로 하여 지정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정에 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함.

라.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 아파

- 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승인권한을 당해 시장에게 위임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기하고자 함.
- 마. 복합건물 건축의 경우 종전에는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소형 공동주택단지 및 시장부지내에 한하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의 복합건물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일반공동주택단지안에서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등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 설치하는 간선시설중 도로, 상·하수도의 설치범위를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동단지경계선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하여, 200m까지는 사업주체가, 200m초과부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도록 함.
- 사. 간선시설중 전기시설의 설치범위를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경계, 단지내 개설예정인 도시계획도로까지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함.

아. 간선시설중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범위를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동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함.

2.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0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6 절지 세

워서 작성) 을 건설부장관 (참조 : 주택국장 전화번호 503-736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주택정보

주택산업 □ 부동산매물 □ 주생활향상의 종합정보지

“
아파트정보는 주택정보라고 해도 이제는
누구나 믿습니다. 12년을 지켜온
신뢰의 답이 그것을 반증합니다.
신속한 정보와 정확한 기사,
예리한 예측기사는 또하나의 아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을 시작하는 사람에서부터
꾸미고 가꾸는 모든이에게
필요충분한 주생활 백과임을
자부합니다.”